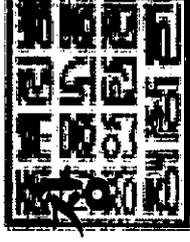


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
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철회 및 취업지원 중단 처분대상자에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당사자 부재 및 연락 미수신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4. 01. 11.

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



- 건 명: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
- 근 거: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, 제29조제1항제6호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
-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연 번	성명	생년월일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 내용		주소	송달불능 사유
				처분사유	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	
1	전O주	71.02.17	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중단처분 사전통지 (의견제출 통지)	수급자격 인정일 이후 연락 두절 및 출석통지 2회 불응(반송) - 1차 출석통지: 2023. 12. 14 - 2차 출석통지: 2023. 12. 21	<input type="radio"/>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<input type="radio"/> 취업지원 중단 처리 <input type="radio"/> 처분일로부터 3년간 국민 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	경기도 시흥시 큰술공원로33번 길 7 304호	폐문부재

4. 공고기간: 2024.01.11. ~ 2024.01.25(15일간)

5.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 시흥고용센터 시흥고용센터 김기경(Tel. 031-496-1955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